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방안 마련 및
신속한 복구 의무 등〉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6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4.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장애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접속 불능으로 인하여 민원 및 복지 업무가 지연·중단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감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 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및 제16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며,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절차의 기간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및 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5조의3(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그 밖에-----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11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시도·서울 시스템)은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로그인에 되지 않아, 민원실 등의 행정업무가 중단되고 정부24 등의 대민서비스에도 장애가 확산되었으며, 2023년 12월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홈페이지에도 해외 특정 IP의 집중접속 및 연말 투찰건수 증가로 일부 사용자의 접속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관련 현황(2023.11.~12.)]

정보시스템	발생일시·기간	장애원인	불편사항	대처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23.11.17. 08:46 ~ 11.18. 09:00 (1일)	광주센터와 대전본원을 연결하는 라우터 포트 불량	공무원 로그인이 필요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및 연계 대민서비스(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등) 접속 장 애	▶라우터 모듈 포트 교체 ▶민원발급 대체 사이트 안내, 수기대장 접수 및 소급 처리
나라장터	'23.11.23. 09:19 ~ 10:21 (62분)	해외 특정 IP에서 집중 접속으로 인한 일시적 과부하	나라장터 홈페이지 일부 사용자 접속불가	▶해당 특정 IP 차단 ▶조달청 “전자입찰 자동연기 기준”에 따라 입찰 연기 공지

나라장터	'23.12.12. 10:00 ~ 10:28 (28분)	연말 투찰건수 증가에 따른 접속자수 초과로 서비스 지연	나라장터 홈페이지 접속 지연	▶최대접속 설정값 변경 및 서버 증설 ▶조달청 “전자입찰 자동연기 기준”에 따라 입찰 연기 공지
------	--------------------------------------	---	--------------------	---

※자료: 행정안전부

연이은 서비스 장애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불안정성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정부는 행정전산망 범정부 대책 TF를 구성하여 상시 장애 예방, 신속 대응 복구, 안정 기반 강화를 3대 분야로 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¹⁾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분야	대과제(12개)	세부과제(26개)
상시 장애 예방	① 위험징후 상시 감시 강화	▲ 개별기관 모니터링 강화 ▲ 범정부 통합모니터링
	② 위험분산형 구조 개선	▲ 장애 확산 방지 인프라 구조 적용 ▲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가속화
	③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강화	▲ 예방점검체계 마련 ▲ 연계현황 사전 관리
	④ 등급제 기반의 효율 관리	▲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 ▲ 장애 등급 신설
신속 대응 복구	⑤ 통합 장애대응체계 구축	▲ 안정성 점검·구조진단 지원 ▲ 신속 대응·복구 ▲ 민관합동 장애 조사 및 사례관리·환류
	⑥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복구 지원체계 마련	▲ 장애 상황관리·전파 ▲ 민관합동 복구 지원체계
	⑦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대국민 안내 강화	▲ 중단없는 행정·민원 서비스 구현 ▲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안정 기반 강화	⑧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 정보시스템 통·폐합 ▲ 국정자원 운영 혁신
	⑨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강화	▲ 운영·유지보수 사업 전문성·연속성 강화 ▲ 공공부문 우수 인재 확보 및 내부 역량 강화
	⑩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	▲ 정보화사업 참여제한 개선 ▲ 대가체계 개선
	⑪ 사업수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	▲ 발주지원 서비스 제공 ▲ 과업내용 투명성 제고,

1) “디지털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4.1.31. 참고

	강화	▲ 사업관리 강화 및 갈등중재제도 개선
	12 인프라 복원력 제고	▲ 노후장비 교체 및 이중화 적용, ▲ 재해복구시스템 실효성 제고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에 대하여 법률에 두 가지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첫 번째는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청의 장애예방·대응방안 마련 및 신속한 복구 의무이고, 두 번째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행정절차 기간의 진행 정지임.

첫 번째, 행정청의 장애예방·대응방안 마련 및 신속한 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2023년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²⁾하고 있는 법률로서 「전자정부법」이 있으며, 동법 제56조의2는 행정기관의 장

2)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게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³⁾하고 있어, 현행과 같이 「전자정부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과 「행정절차법」에 함께 명시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두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행정절차 기간의 진행 정지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는 유사 입법례⁵⁾를 고려할 때 현행법

3)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행정절차법」에 규정하는 경우,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 적용 범위에 해당함.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4. (생략)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8. (생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 또는 납부·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상으로도 「행정절차법」 제16조제1항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⁶⁾에 근거하여 기간의 진행을 정지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같이 하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가 기간 진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함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대응·복구 등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등에 대한 기간·기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2. (생략)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5. (생략)

6)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